

세무와회계저널
제16권 제6호 2015년 12월 pp.109~133
한국세무학회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제도 개선방안 연구

박정우* · 정래용**

<요 약>

본 연구는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세 과세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두 종류의 인적용역사업자의 특성을 반영하되 이를 종합적으로 접근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의제 일용근로직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기타소득 과세방법을 원용하여 정액이 아닌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과세표준에 대해 저율로 원천징수하고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이다. 또는 인적용역사업자의 번거로운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나 과세관청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1%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전문훈련직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문훈련직 인적용역사업자가 장래에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이러한 증빙을 미리 수집해 둔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총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일종의 창업비 상각액으로 간주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방법이다. 공제 비율은 직업군별로 차등 적용하되 소득발생시점부터 일정기간동안(예 : 5년) 적용한다. 그리고 일정비율은 소득금액 구간별로 차등을 두되 순차적으로 비율이 감소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둘째, 전문훈련직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가 가사 및 생계관련 비용과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총수입금액과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성격의 필요경비 이외에 일종의 생활비성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해주는 방안이다. 생활비성 필요경비는 직업군별로 차등 적용하되 소득금액의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인적공제 개산공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방법이다. 일정비율은 창업비 성격의 투입비용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득금액 구간별로 차등을 두되 순차적으로 비율이 감소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셋째, 전문훈련직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특정한 기간에 평생소득을 집중적으로 벌어들이는 특성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정도는 직업군별로 차별적이어야 할 것이다. 상대적인 저율과세 적용방법은 퇴직소득세 계산 시 적용하는 연분연승법을 원용할 수 있다.

<주제어> 인적용역사업자, 기타소득 과세방법, 창업비 성격의 필요비용, 생활비성 필요경비, 연분연승법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patrick@yonsei.ac.kr, 제1저자

** 홍익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ryjung@hongik.ac.kr, 교신저자

I. 서 론

우리나라는 전체 취업자의 약 31.3%가 자영업자이고¹⁾(일본은 13%, 독일은 11.7%, 프랑스 9%, 미국은 7%다. OECD평균은 15.8%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독일의 거의 3배요 OECD평균의 거의 2배인 셈이다. 이는 IMF환난에 따른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전체 노동자의 49.7%가 비정규직이다(전체 노동자 1,800만중 약 절반인 895만이다).²⁾ 따라서 취업자의 1/3이 자영업자요 1/3이 정규직, 또 다른 1/3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그리고 2011년 국세청통계분석자료에 따르면 기타 서비스업종(인적용역사업자 포함)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수입금액은 전체의 5.4%에 불과하나 인원은 전체의 27.5%를 차지하여³⁾ 인적용역사업자는 이보다 적을 지라도 인원 비중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저소득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현안이 되어온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관련 세법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세법상 개념이 정규 법체계가 아닌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표의 경비율 적용 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실정이고 관련 세법 규정도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세법에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며 법 규정의 체계성도 없다. 즉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는 세법에서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관련 연구도 미미한 실정이다.

프리랜서 또는 1인 기업가라고 불리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일부 고소득 운동선수나 연예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영세한 사업자다. 그리고 소득세법상 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므로 소득 신고 누락의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영세한 1인 사업주라서 기장능력도 없고 세무대리인을 고용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특히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신고하는 경우 결정세액비율이 1%내외임에도 불구하고 3%를 원천징수하고 있어 확정 신고 과정에서 환급이 발생하고 있으나 기장능력 부족으로 인해 환급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들 인적용역사업자는 사실상 근로소득자 또는 일용근로자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비해 거의 2배 수준의 세액을 부담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교육비나 의료비 같은 특별공제항목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이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직업운동가나 가수 또는 연예인 같은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수입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종의 창업비 성격의 교육훈련비용이 발생하나 이들 비용이 필요경비로 고려되지 않고 있고 이들의 소득은 전문적인 지적노동의 대가이므로 관련 비용이 많지 않거나 가사 관련 및 생계관

1) 50대 이상 자영업자의 절반가량인 44.7%가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연합뉴스, 2015.7.31.).

2) 이정환, 2014, 『한국의 경제학자들』 생각정원. p.24

3) 김남중·정래용, 2014,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p.297

런 비용과 혼재되어 있어 이들 비용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이 현업에서 활동하여 수입을 얻는 기간이 비교적 짧아 그 기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고액이거나 변동성이 크다. 그러나 생애소득의 관점에서 이들 수입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점이 세법에서 고려되고 있지 않다. 즉 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의 인적용역자 직업군들의 상황이 소득세법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에 도입되고 2013년부터 요건이 강화되기 시작한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직업운동가나 가수 또는 연예인 같은 인적용역사업자 직업군의 세무신고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인적용역사업자 직업군을 그 특성에 기초하여 두 종류로 분류하였다. 즉 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와 유사하며 세법상으로는 사업자지만 저소득자로 배려 받아야 할 직업군(이하 “의제 일용근로직 인적용역사업자”)과 직업운동가나 연예인처럼 정상적인 소득 발생 전에 일정한 창업비 성격의 투입 비용이 발생하는 직업군(이하 “전문훈련직 인적용역사업자”)으로 구분하여 소득세 과세제도에 대한 대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 동안의 선행 연구는 이러한 직업군의 어느 한쪽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개선 방안도 방향제시에 그쳤으며 그나마 관련 연구도 많지 않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선행 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제Ⅲ장에서는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세 과세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제Ⅳ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언급한다.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 연구

1. 인적용역사업자의 개념 및 사업자 현황

가. 소득세법상의 개념

인적용역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동령 제42조에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동령 제184조 제1항에 따라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는 사업자를 말한다.⁴⁾ 인적용역사업자는 자유직업소득자 또는 프리랜서로도 불리며 현실에서는 프로운동선수, 연예인, 가수, 작가뿐만 아니라 학원 강사, 학습지도사, 프리랜서 번역가, 프리랜서 디자이너, 보험모집인, 차량딜러, 골프장 캐디, 다단계판매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4) 소득세법은 인적용역사업소득 외에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의료보건의료 및 봉사료수입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봉사료의 경우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봉사료 전액에 대하여 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이러한 인적용역사업자의 구체적인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초로 매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표에 구분되어 있으며⁵⁾ 기준경비율 적용 총칙에 의하면 인적용역 사업자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제공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동령 제42조에 따른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⁶⁾ 동령 제42조 제1호에 의하면 인적용역사업자는 도·소매업 등 다른 업종의 사업자와 달리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열거된 13가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⁷⁾ 만일, 타인의 자동차를 판매대리 하는 사업자가 사업장과 같이 물적 시설을 갖추었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면 도·소매업의 자동차 판매대리사업자(업종코드 501032)로 분류될 것이며 물적 시설이나 근로자가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판매대리 하는 사업자라면 서비스업의 인적용역사업자(업종코드 940908)로 분류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하면 물적 시설이라 함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한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프로선수들의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고교생이나 대학생 등 아마추어 선수들의 경우 소득의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다.⁸⁾

한편 인적용역사업자가 전체 개인사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들의 과세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적용역사업자의 개념이 정규적인 세법체계가 아닌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표의 기준경비율 적용 총칙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세법체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인적용역사업자의 개념을 국세기본법이나 소득세법 체계에 반영하고 관련 세법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본다.

나. 다른 소득자와의 비교

(1) 근로소득자와의 비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⁹⁾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하지 않고 근로소

5) 국세통계연보에 인적용역사업자는 별도로 구분되어 통계되어 있지 않고 기타 서비스 업종에 포함되어 통계자료가 작성되고 있다.

6) 인적용역의 개념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규정인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동시행령 제179조 제6항에 4가지로 열거되어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및 제19호에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인적용역이 열거되어 있다.

7) 의료업, 변호사업, 법무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물적 시설이나 근로자 고용이 없을 수 없으므로 인적용역 사업자와 무관하다.

8) 최진구·한문성, 2012,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한 과세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상업교육연구(한국상업교육학회), 제26권 제3호. p.337

9)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정의하고 있다.¹⁰⁾ 대법원은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¹¹⁾

인적용역사업자는 세법상 사업자의 지위에서 민법에 규정한 도급과 같은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는 자라고 볼 수 있다. 민법상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다.¹²⁾ 따라서 인적용역사업자는 다른 사업자로 부터 어떤 일을 맡아 처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업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4대 보험료 등의 비용부담을 지게 되고 근로기준법 준수¹³⁾ 등 노동법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각종 의무를 지게 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¹⁴⁾ 이런 이유에서 사업자들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근로자로 세무서에 보고하기 보다는 사용자로서 의무가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로 세무서에 보고하는 것을 선호한다.¹⁵⁾ 즉 사업주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근로자로 고용하면서 계약만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인적용역사업자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용역제공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근로자로서 일을 하였으나 인적용역사업자로 계약하여 추후 퇴직시에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금을 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제소하는 사례¹⁶⁾가 많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에게도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바¹⁷⁾ 여기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보험모집인, 트럭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인적용역사업자를 말한다.¹⁸⁾ 이는 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가 본질적으로 유사함을 보여준다.

10) 소득세법 제20조

11) 대법원2004다29736 등 다수

12) 민법 제664조

13)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15) 사용사업주가 인력공급업체(파견사업주)와의 도급계약을 통해 청소용역 등을 제공받는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와 실질이 유사하다.

16) 대법원2004다29736,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18) 박노현·김엘림, 2009, 「사회보장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p.136

(2) 일용근로소득자와의 비교

인적용역 사업자는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아야 하고 근로자를 고용함이 없이 순수하게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인 것이므로 사실상 1인 기업가인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고소득자인 직업운동가나 작가 또는 연예인과 같은 인적용역 사업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세한 개인 사업가라는 점과 정해진 일거리가 없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용역을 수주하여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용근로자와 유사하다.

일용근로자는 근로일수나 시간 또는 성과에 따라 대가를 계산하고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하역작업 종사자는 기간제한이 없음)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시적인 고용자를 말하며 1일당 근로소득 공제(100,000원)후 단일 소득세율(6%) 및 55%의 근로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한다. 연말정산은 없으며 분리과세로 과세를 종결한다(완납적 원천징수). 다만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를 분기별로 다음달(4분기는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반면 일반근로자는 월급 등의 형태로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는 계속근로자이며(하역작업자 제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되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6-38% 세율 적용). 사용자는 월급 등 지급 시 간이세율표에 의한 세금을 공제(예납적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의무가 있다.

(3) 인적용역사업자의 특징

결국 인적용역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제 일용근로직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는 사실상 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와 유사함을 알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아야 할 영세한 사업자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전문훈련직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는 훈련 또는 경력관리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수입이 발생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교육훈련비용이 발생하며 조기은퇴 등의 이유로 수입이 발생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특징이 있다.

인적용역사업자는 물적 시설 없이 그리고 근로자 고용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일종의 지적노동자이므로 재택근무는 이들의 특징을 반영한다. 미국 노동통계국의 2001년 조사에 따르면 1주일에 한 번 이상 재택근무를 한 미국인은 1,980만명으로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5%에 달한다. 그리고 1,980만명 중 50%는 재택근무분에 대해 별도로 급여를 받지 않는 봉급생활자들이고 17%는 재택근무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받는 봉급생활자들이었다. 나머지 33%는 자신의 집에서 일을 하는 소호(SOHO : 재택에 사무실을 만들어 활동하는 프리랜서, 전문직업인 즉 인적용역사업자)들이었다. 그리고 재택근무자 중 63%는 인터넷이나 이메일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⁹⁾

19) 공병호, 2002, 「1인 기업가로 홀로서기」, 21세기북스, pp.81-82.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통계를 확인할

다. 인적용역사업자 현황

2011년 귀속 인적용역사업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지급 규모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병의원을 제외한 인적용역사업소득자는 3,194,642명이고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는 15,540,057 명으로서 인적용역사업자 인원이 근로소득자 인원 대비 20.5%에 달하여 적지 않은 인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타 서비스 업종(인적용역사업자 포함)의 2011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수입금액은 전체의 5.4%에 불과한데 인원은 전체의 27.5%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바²⁰⁾ 인적용역사업자는 이보다 적을지라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할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인적용역 사업자의 연간 수입금액이 1천만원 이하자가 전체의 74.1%(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180만원)로서 대부분 영세한 사업자들이다.²¹⁾ 4천만원 이하자는 전체의 93.2%다.²²⁾ 대부분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4,80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입금액을 벌고 있는 사업자들임을 알 수 있다. 상기 자료를 통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업종을 분석해 보면 다단계판매가 22.1%이고 기타 모집수당 17.4%, 기타 자영업이 17.1%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원 강사가 9.9%, 방판·외판원이 9.6%다.²³⁾

『프리 에이전트』의 저자인 다니엘 핑크는 프리 에이전트를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오는, 한 명의 고용주가 있는, 단일하고 영구적이며 연중 지속되는, 영속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은 직업”이라고 정의하면서 미국의 프리 에이전트를 세 가지 종류로 나눈다. 첫째 유형은 단독사업자(인적용역사업자)인데 그들은 자신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판매하면서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옮겨 다니는데 보통은 혼자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 숫자는 미국에 1,650만 명 정도라고 한다. 다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비정규직)로 그 숫자는 350만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세 명에서 다섯 명 정도까지 아주 작은 규모의 직원을 두고 있는 초소형사업체로 미국 내에만 약 1,300만개가 있다고 한다. 총 3,300만 명의 프리 에이전트가 있는 셈인데 이는 미국 노동 인구의 약 25%다. 인적용역사업자는 프리 에이전트 중 50%를 차지한다.²⁴⁾

수 없으나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일 것으로 본다.

20) 김남중·정래용, 전계 논문, p.297

21) 전계 논문, p.294

22) 이들은 사업소득을 지급자로부터 원천징수 당하고 있으므로 개인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지 않은 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23) 전계 논문. p.295

24) 공병호, 2002, 『1인 기업가로 홀로서기』 21세기북스. 100, p.258

2.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제도

가.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사업자,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민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²⁵⁾ 따라서 비사업자인 개인이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그리고 인적용역사업자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²⁶⁾ 이때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이하자의 경우는 간편장부대상자로 한다.²⁷⁾ 근로소득만 있는 자나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연간 소득금액 7,500만원 미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 정산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반면 연말정산 방식 이외의 종합신고 방식을 적용하는 인적용역사업자(이하 “다른 인적용역사업자”)는 원천징수를 하였더라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따라서 확정 신고 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적으면 납부세액이 발생되고 결정세액 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환급세액이 발생된다.

2008년 귀속 국세청통계자료에 의하면 인적용역사업자의 원천징수 인원은 3,181,831명이나(의사 등 고소득자나 및 보험모집인등 연말정산대상자를 제외)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인원은 기타 서비스업(인적용역사업자 포함)이 겨우 918,738명(단순경비원 신고자로 과세 미달자는 제외)으로서 28.8%에 불과하다.²⁸⁾ 따라서 단순경비원 신고 과세 미달자를 감안하더라도 인적용역사업자 중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는 자가 상당수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원천징수세액 환급포기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²⁹⁾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자

25)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3항,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

26)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인적용역소득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영업자소득에 포함되어 과세하는데 추정세금을 매 분기에 납부하되 확정 신고·납부 시 정산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우리나라의 인적용역사업자는 원천징수 후 종합 신고하는 것이 다르다(장근호, 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 : 미국편(Ⅰ)』, 한국조세연구원. pp.235-242).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인적용역사업소득을 사업소득과 구분하고 있다(김유찬·이유향, 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편』, 한국조세연구원. pp.60-75)

27)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동령 제208조 제5항 다목

28) 국세통계연보에 인적용역사업자는 별도로 구분되어 통계되어 있지 않고 기타 서비스 업종에 포함되어 통계자료가 작성되는 점을 감안하면 인적용역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비율은 훨씬 낮아질 것이다.

29) 김남중·정래용, 전계 논문, p.297

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결정하도록 규정³⁰⁾하고 있으므로 인적용역사업자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과세관청이 결정을 하여 환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과 원천징수세액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0.3.18일 국세청 보도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2008.9월(139만명 711억), 2009.9월(38만명 280억), 2010.10월(인원 및 금액 미정) 세 번에 걸쳐 시혜성으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한 적이 있다.

나.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이 받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³¹⁾

연말정산 방식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서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결정세액 보다 원천징수세액이 적은 경우 추가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결정세액 보다 원천징수세액이 많은 경우 인적용역사업자에게 환급한다.

연말정산 방식 이외의 종합신고 방식을 적용하는 인적용역사업자인 다른 인적용역사업자는 추계신고 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반면 사업소득 연말정산자는 추계신고 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별도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사업소득 연말정산자의 경우 납세의무 이행 절차나 추계유형 판정에 있어서 다른 인적용역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³²⁾

다. 추계과세제도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나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내용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

30) 소득세법 제80조

31) 소득세법 제144조의2.

32)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4호

조사 결정하여야 하나 장부·기타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추계방법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방법이다.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제143조는 납세자가 신고하는 경우가 아닌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추계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결정과 경정이 아닌 신고의 경우에 추계신고의 분명한 근거가 세법에 없음에도 인적용역사업자를 포함한 많은 개인 사업자가 현실적으로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고 있다. 이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확정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를 제출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3. 선행 연구 검토

가. 선행 연구에 따른 인적용역사업자 과세제도의 문제점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선행연구를 소득세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최진구(2010)의 연구

설문조사를 통한 인적용역사업자(직업운동가, 작가/연예인 및 다단계판매원과 보험설계사)의 과세실태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인적용역사업자의 신고소득 금액은 실지소득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또한 실지소득금액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소득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적용역사업자의 발생비용이 생계비 또는 가사 관련 비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세법의 규정과 충돌하고 있고 지출증빙의 수집도 다른 소득자에 비해 어렵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리고 과거의 비용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못하여 인적용역사업자가 주관적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소득금액과 세법상의 과세소득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과소 신고하게 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인적용역사업자의 수입금액 대비 실지소득율의 분석결과 인적용역사업자의 직업군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인적용역사업자의 분야별로 소득의 발생 구조와 비용의 유형 및 비중이 다르다는 것을 입증한다.

셋째, 과세순응도에 있어 직업운동가의 반응이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직업운동가가 현실적으로 전직이 어려운 직종에 속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전직이 용이한 다단계판매원과 보험설계사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용역사업자들은 전반적으로 엄격한 세법의 적용에 의한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이에 순응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인적용역사업자들은 다른 소득자들에 비해 세 부담의 형평성에 있어 불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이유는 ① 전체의 수입발생기간에 대응될 비용이 대부분 수입발생 이전에 투입된다. ② 당해 연도 수입금액에 대응될 비용도 대부분 세법에서 규정한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에 해당하는 가사 관련 비용이거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의 유형에 해당한다. ③ 소득의 발생기간이 비교적 짧고 소득의 변동성이 크다.

(2) 최진구·홍정화(2011)의 연구

설문조사를 통한 인적용역사업자(직업운동가와 작가·연예인 그룹)의 과세실태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세 부담의 공평성에 있어 세무업무종사자 집단(기장 실무자, 세무전문 자격사, 세무공무원) 모두 인적용역 사업자가 타 소득자에 비해 불리하다고 인식했다.

둘째, 사례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으로 제기된 소득구분에 의한 과세방법, 과세기간 및 세율 적용, 필요경비의 범위, 과거투입비용의 불인정 등에 대하여 세무업무종사자 집단 모두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했다.

셋째, 개선방안의 선호도는 소득구분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중 단순경비율에 의한 과세, 과세기간 및 세율 적용에 대해서는 실제 사업 기간 전체의 소득금액에 대한 연분연승법, 필요경비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한도를 정하여 인정하는 방법, 과거 투입비용에 대해서는 창업비로 계상하여 활동기간동안 상각하는 방법 등이 세무업무종사자 집단 전체의 각각 1순위로 나타났다.

넷째, 세무업무종사자 집단의 현행 과세방식에 대한 개선 대상의 선호도는 필요경비의 범위, 과거투입비용의 인정, 세율의 적용 방법, 소득의 분류방법, 과세기간의 순서로 나타났다.

상기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과거투입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계자료 등을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둘째, 가사 관련 및 생계관련 비용 등 업무와의 관련성이 모호한 필요경비의 인정범위에 대하여는 관련된 모든 지출비용을 인정하되 한도를 정하여 공제하는 방법과 인적용역소득자의 동일한 분야 종사자간 소득율의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방법을 선택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대부분 수입이 발생하기까지 오랜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수입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수입발생이 지속되는 기간이 단기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퇴직소득의 과

세방법인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신현걸·정재연(2014)의 연구

인적용역사업자 중 작가의 인적용역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다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구간, 가산세를 적용하기 시작하는 구간, 그리고 기준경비율에 1/2을 곱한 비율을 적용하는 구간 등 3개의 구간에서 조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턱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인적용역사업자의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감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범위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기준경비율에 1/2을 곱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말 것을 제안하였다. ① 본인이 직접 용역을 제공하므로 재고자산의 매입비용, 임차료 및 인건비 등 주요 경비가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다. ② 이들이 제공하는 용역이 대부분 지적용역이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명시적 필요경비가 없어 가장 자체가 불가능하다. ③ 다른 유형의 사업소득자에 비해 수입금액이 대부분 명확하게 노출된다. 이는 3% 원천징수에 기인된다.

(4) 김남중·정래용(2014)의 연구

운동선수 및 연예인등과 같은 고소득 인적용역 사업자 이외에 대다수 인적용역사업자의 세 부담 과다문제와 다른 납세자와의 세 부담 형평성 문제를 연구했다.

첫째, 총수입대비 단순경비율 대상자 결정세율이 1% 내외여서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3% 원천징수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의 경우보다 과다함을 확인하였다. 인적용역사업자 전체 인원 중 연간 소득지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인원이 74.1%임을 감안하면 이는 대다수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하여 종합과세 확정 신고 시 불필요하게 환급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대부분의 인적용역사업자들은 영세한 사업자들이므로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위임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 세무서의 신고서 작성 도움창구를 방문하여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비율은 28.8%에 불과해 대부분 환급을 포기하고 있다.

셋째, 총수입금액이 16,000천원인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결정세액이 218천원이고 근로소득자는 117천원으로서 인적용역사업자가 거의 2배의 세액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등 특별공제 항목을 추가로 소득공제 또는 세액 공제할 경우³³⁾ 그 차이는 더 커질 것이다.

넷째, 인적용역사업자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이므로 주요경비가 거의 없다.³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용역

33) 인적용역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 사실상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인적용역사업자에게 특별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34) 신현걸·정재연, 2014.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추계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와회계저널 제15권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를 포함한 단순경비율(75%)과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준경비율(38.8%)이 36.2%나 차이가 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³⁵⁾ 이는 인적용역사업자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다섯째,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규모의 영세성에 따른 기장능력 유무를 떠나 무기장가산세 등 인센티브(벌칙)를 통해 장부기록을 유도하려는 효과의 현실성이 의문시된다.³⁶⁾

여섯째, 사업소득 연말정산자인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납세의무 이행절차나 추계유형 판정에 있어 다른 인적용역사업자에 비해 유리하므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상기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인적용역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의 인하(1%),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특별공제항목의 인정,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완화, 근로장려금 지급 등을 제안하였다.

나. 선행 연구의 시사점과 본 연구의 차별성

이 분야의 연구는 최진구(2010)의 연구가 거의 최초이며 후속되는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최진구가 포함된 여러 연구들과 신현걸·정재연(2014)의 연구는 직업운동가와 작가·연예인과 같은 전문훈련직 인적용역사업자를 중심으로 연구했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김남중·정래용(2014)의 연구는 직업운동가와 작가·연예인과 같은 고소득 인적용역사업자 이외의 저소득 의제 일용근로직 인적용역사업자를 중심으로 연구한 점이 차별적이다. 본 연구는 양자를 모두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양자의 특성을 반영하되 이들을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발전시켰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III.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세 과세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1. 인적용역사업자의 구분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등을 통해 지적된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발전시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인적용역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두 부류로 구분하여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제5호. p.310

35) 일정한 비율로 계산된 생활비성 경비를 주요경비로 인정해주는 정책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이 경우 기준경비율의 인상을 의미한다.

36) 신현걸·정재연(2014)의 연구에서는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무기장가산세의 폐지를 주장하였다(p. 310)

다.³⁷⁾

첫째,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사업자이나 후술하는 전문훈련직 인적용역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써 사실상 근로소득자 또는 일용근로자와 구분이 어려운 1인 개인사업자를 이들의 일용근로자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의제 일용근로직 인적용역사업자로 구분한다.

둘째, 직업운동가나 작가 또는 연예인등과 같이 정상적인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일정한 교육훈련시간이 소요되고 창업비 성격의 투입비용이 발생하는 인적용역사업자인 전문훈련직 인적용역사업자로 구분한다.³⁸⁾

직업운동가의 경우 골프나 축구 또는 야구 등 프로운동선수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나 스포츠산업의 육성 필요성 또는 스포츠를 통한 외교노력의 중요성 그리고 연예인들을 통한 한류문화의 확산과 같은 우호적인 국가 이미지 형성의 중요성, 또는 1인 기업가 형태의 전업 작가들이나 전업 예술가들의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한다면 이들에 대한 세제는 현실과 괴리되어 있고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본다.

2. 의제 일용근로직 인적용역사업자

가. 의제 일용근로직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문제

(1) 과세형평성 문제

과세형평성의 관점에서 의제 일용근로직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제 일용근로직 인적용역사업자는 사실상 근로소득자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자에 비해 거의 2배의 세액을 부담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등 특별공제항목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해주는 혜택마저 배제되고 있다.

둘째, 납세의무 이행절차나 추계유형 판정에 있어 사업소득 연말정산자인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다른 인적용역사업자에 비해 유리하므로 상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셋째, 인적용역사업자 본인이 직접 용역을 제공하므로 재고자산의 매입비용, 임차료 및 인건비 등 주요 경비가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다. 그러나 의제 일용근로직 인적용역사업자의 가사관련 및 생계관련 비용이 사실상 주요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추계신고 과정에서 기준경비율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인적용역사업자들이 도·소매업 등 다른 업종의 사업자에 비해 세제상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37) 관련 세법이 개정된다면 실제 적용 과정에서 인적용역사업자의 유형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표의 구분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명확하게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38) 가수협회나 연예인협회 같은 전문가 단체에 등록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2) 원천징수세액 환급 포기 및 행정력 낭비 문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제 일용근로직 인적용역사업자는 소득세법상으로는 인적용역사업자이나 사실상 일용근로자와 유사한 영세한 사업자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비용 때문에 현실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신고를 위임하지도 못하고 세무지식이 많지 않아 복잡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이들 인적용역사업자는 세무서 신고서 작성 도움창구를 방문하여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적용역사업자의 종합과세 신고비율은 28.8%에 불과하다. 이는 의제 일용근로직 인적용역사업자들의 원천징수세액 환급 포기³⁹⁾에 따른 재산상의 불이익 뿐만 아니라 국세징수 절차의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의미한다.

나. 의제 일용근로직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과세방법 개선방안

(1) 일용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원용

의제 일용근로직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일용근로소득자에 대한 과세방법을 원용하되 양자의 차이를 반영하여 면세점이나 세율 적용 등에 있어 차등을 두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일용근로자는 면세점(일 100,000원) 이상의 소득⁴⁰⁾에 대해서만 저율(6%)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⁴¹⁾ 5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⁴²⁾ 원천징수하고 과세를 종결하고 있는바, 의제 일용근로직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과세원칙을 원용하되 소득발생 형태가 일용근로자와는 달리 일당 형태의 소득이 아니므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기타소득 과세방법을 원용하여 정액이 아닌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과세표준에 대해 저율로 원천징수하고 소득금액이 일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종합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한 추계과세를 적용할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추계과세에 따른 여러 가지 불이익의 가능성이 해소된다. 기타소득 과세방법과 관련된 세법규정은 다음과 같다.

원작자의 원고료, 인적용역의 일시제공으로 인한 대가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에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해 총수입금액의 80%(보유기간 10년 이상의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소득은 90%)와 실제 투입된 비용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계산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일정한 세율(15-30%)로 원천징수하고⁴³⁾ 조건부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9)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율이 3%이나 총수입 대비 단순경비율 적용자 결정세액율이 1% 내외인 것은 원천징수 과다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환급이 발생하게 됨을 암시한다(전계 논문, pp.296-297).

40)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41)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42) 소득세법 제59조 제2항

43)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는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2) 단일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과세종결하는 방법

김남중·정래용(2014)의 연구에 따르면 총수입대비 단순경비율 적용자 결정세액비율이 1%내 외임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확정 신고 시 환급이 발생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환급과정에서 영세한 인적용역사업자의 과도한 세무신고비용이나(신고포기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이 더 큰 문제다) 과세관청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제 일용근로직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1% 단일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과세를 종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영세한 인적용역사업자의 번거로운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나 과세관청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여줌을 의미한다.

(3) 개선방안 도입의 이유 및 장점

의제 일용근로직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상기 과세 방법의 이유 및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제 일용근로직 인적용역사업자는 사실상 일용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와 유사한 특징이 있으므로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사업자와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

둘째, 의제 일용근로직 인적용역사업자는 영세한 사업자들이 대부분이므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들에게 세법적인 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

셋째, 의제 일용근로직 인적용역사업자의 과세부담 및 세무신고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장기적으로 이들 사업자들이 관련 시장에 신규로 유입되는 것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본다. 즉 고용측면에서 바람직하다.

3. 전문훈련직 인적용역사업자

가. 전문훈련직 인적용역사업자의 특징

전문훈련직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소득 발생 및 투입 비용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나 현행 소득세법은 아직 이러한 특수상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첫째, 정상적인 수입금액이 발생할 때까지 일정한 교육훈련기간이 필요하고 적지 않은 창업비 성격의 투입비용이 발생하다가 무형의 권리 또는 소득창출 능력이 형성된 이후부터는 수입금액은 많아지지만 이에 대응되는 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형태를 띤다.⁴⁴⁾ 이들 소득이 지적 노동에 대한 대가인 특성에 기인한다.

44)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대한 일정한 비율(80% 또는 85%)의 필요경비 인정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둘째, 의제 일용근로직 인적용역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전문훈련직 인적용역사업자의 필요 경비는 가사 관련 및 생계관련 비용과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인적용역의 특성상 이러한 비용은 소득과의 대응 측면에서 실질적인 관련성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인정받기 어렵다.⁴⁵⁾

셋째, 전문훈련직 인적용역사업자들 대부분이 소득의 발생기간이 짧고 소득변동의 위험이 크다. 예컨대 직업운동가의 경우 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생애소득의 관점에서⁴⁶⁾ 다른 소득자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불공평하다. 또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사업자의 경우 예컨대 약 20년 동안 수입이 발생하지 않다가 작품 하나가 베스트셀러가 되어 수익원의 인세를 받게 되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게 현실이다. 연예인의 경우 소득금액이 대중의 인기도 등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집중되거나 연도별로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⁴⁷⁾

나. 전문훈련직 인적용역사업자와 성실신고 확인제도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세무사 등이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2011년부터 적용되고 있다.⁴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즉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2014년귀속 소득 분부터 기준이 강화되어 적용되고 있다. 즉 도매 및 소매업 등의 경우는 종전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조업 등의 경우는 종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부동산 임대업 등의 경우에는 종전 7.5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전문직 사업자의 경우는 7.5억원으로 일원화되었으며 2013년 귀속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는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 제1항 3호에 의거 수입금액 기준이 5억원이다.

45) 언론 보도로 인해 주목을 끄는 연예인등 유명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수입누락뿐 아니라 허위증빙 또는 비적격 증빙이 문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들의 사업소득의 특징은 창업비 성격의 초기 투자로 인해 소득은 크지만 이에 대응시킬 수 있는 필요경비가 소득에 비례하는 만큼 많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허위증빙이나 가사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반영시켜 과세표준을 줄이고자 하는 유혹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는 세금탈루의도라기 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본다.

46) 이들은 다른 사업자가 평생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을 특정 기간(예 : 직업운동가의 경우 10년)에 집중적으로 벌어들인다는 특징이 있다. 가수나 연예인의 경우 직업운동가에 비해 활동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며 다른 사업자와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47) 최진구·한문성, 전계 논문, pp.341-342

48) 소득세법 제70조의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문훈련직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수입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의 상당 부분이 창업비 성격의 투입비용으로서 수입발생 이전에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관련 비용이 거의 없으며 가사 관련 및 생계관련 비용과 혼재되어 있어 세법상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성실신고 확인과정에서 적격증빙구비 등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은 2015.4.28. 보도 자료를 통해 53만명에게 전산분석 자료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적격증빙 과소수취,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등에 대한 철저한 사후검증 등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기준금액 이하로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 분석을 통해 탈루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은 적격증빙 구비 등에 있어 어려움이 특히 큰 전문훈련직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과정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 전문훈련직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과세방법 개선방안

전문훈련직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속한 직업군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1) 창업비 성격의 투입비용에 대해 소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방법

전문훈련직 인적용역사업자가 장래에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이러한 증빙을 미리 수집해 둔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총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일종의 창업비 상각액으로 간주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방법이다. 공제 비율은 직업군별로 차등 적용하되 소득발생시점부터 일정기간동안 적용한다. 그리고 일정비율은 소득금액 구간별로 차등을 두되 순차적으로 비율이 감소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필요경비 인정기간은 과거 창업비에 대한 감가상각기간이 5년이었고 영업권에 대한 상각기간도 5년이었음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외에도 여기에 대해 원용할 수 있는 세법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기타소득 필요경비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에 정하는 기타소득에 한하여 총수입금액의 80%(보유기간 10년 이상의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소득은 9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이는 지적노동에 대한 대가인 소득의 경우 과거의 교육훈련비용을 총수입금액의 일정한 비율로 인정해 주기 위한 것이다.

(나) 양도소득세 계산시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토지와 건물(미등기양도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 제외)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조합원 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제외)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일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1세대1주택은 24—80%, 1세대1주택 이외의 자산은 10

-30%)을 곱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공제한다.⁴⁹⁾ 이는 부동산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전문훈련직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적지 않은 기간 동안의 교육훈련에 대한 보상성격의 필요경비 인정에 원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 후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 감면한다.⁵⁰⁾ 이때 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이때 5년은 창업비 성격의 투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기간에 원용할 수 있다고 본다.

(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역, 업종, 규모에 따라 5-3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⁵¹⁾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를 규정한 것이지만 총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창업비 상각액으로 보는 비율 결정에 원용할 수 있다고 본다(특별세액 감면율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공제율로 환원하여 원용).

(마)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성장동력 연구·인력개발비, 원천기술연구·인력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내국인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일정한 비율(8-30%)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한다.⁵²⁾ 전문훈련직 인적용역사업자의 과거 교육훈련비용은 일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성격을 고려한다면 상기 비율도 전문훈련직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원용할 수 있다고 본다(세액 감면율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공제율로 환원하여 원용).

(2) 생계 및 인적경비성 비용에 대해 개산공제율을 적용하는 방법

이는 전문훈련직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가 가사 및 생계관련 비용과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총수입금액과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성격의 필요경비 이외에 일종의 생활비성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해주는 방안이다. 생활비성 필요경비는 직업군별로 차등 적용하되 소득금액의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인적공제 개산공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방법이다. 일정비율은 창업비 성격의 투입비용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득금액 구간별로 차등을 두되 순차적으로 비율이 감소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여기에 대해 원용할 수 있는 세법규정은 다음과 같다.

49)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50)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5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5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가)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의 필요경비는 생계비와의 구분이 곤란하므로 실제필요경비는 공제하지 않고 일종의 개산비용인 근로소득공제만 인정된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2-70%를 공제하며 총급여가 증가할수록 공제율이 감소하는 누진구조로 되어 있다.⁵³⁾

(나)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는 퇴직소득금액의 40%를 공제하는 정율공제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공제되는 근속연수공제(연 30만원-연 120만원)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⁵⁴⁾ 이는 퇴직자에 대한 정책적인 소득공제제도지만 전문훈련직 인적용역사업자의 생활비성 필요경비 공제에 원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다) 양도비용 개산공제

양도차익 계산과정에서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및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은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적용하되 양도자산별로 개산 공제율은 기준시가 등의 1-7%로 한다.⁵⁵⁾ 이는 실제로 입증되는 양도비용 인정을 배제하고 개략적인 양도비용을 일률적으로 인정해 주기 위한 제도로서 전문훈련직 인적용역사업자의 생활비성 필요경비 공제에 원용할 수 있다고 본다.

(3) 생애소득을 고려한 연분연승법 세율 적용

전문훈련직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특정한 기간에 평생소득을 집중적으로 벌어들이는 특성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정도는 직업군별로 차별적이어야 할 것이다. 상대적인 저율과세 적용방법은 퇴직소득세 계산 시 적용하는 연분연승법을 원용할 수 있다. 관련 소득세법은 다음과 같다.⁵⁶⁾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므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결집효과가 발생한다. 즉 누진과세에 따라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조세정책상 다음과 같은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text{퇴직소득 과세표준} \div \text{근속연수} \times 5) \times \text{기본세율} \div 5 \times \text{근속연수} = \text{퇴직소득 산출세액}$$

53)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

54)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55)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56)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이때 괄호 안의 금액은 5년치 퇴직소득 과세표준이며 배율인 5를 곱하고 나누는 산식은 2013년부터 추가되어 적용되고 있다. 종전 규정에 따라 1년 평균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고소득자에게 지나치게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어왔다. 전문훈련직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직업군별 특성을 반영하여 상기 배율을 차별적으로 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인적용역사업자를 두 종류로 구분하였다. 즉 사실상 근로소득자 또는 일용근로자와 구분이 어려운 1인 개인사업자로서 영세한 일용근로자적인 특성을 가진 의제 일용근로직 인적용역사업자와 직업운동가나 작가 또는 연예인과 같이 정상적인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일정한 교육훈련시간이 소요되고 창업비 성격의 투입비용이 발생하는 인적용역사업자인 전문훈련직 인적용역사업자다. 의제 일용근로직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는 사실상 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와 유사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아야 할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3%라는 고율로 사업소득이 원천징수 되고 있으며 근로소득자나 일용근로자와는 달리 종합소득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인적용역 사업자의 연간 수입금액이 1천만원 이하자가 전체의 74.1%이고 4천만원 이하자는 전체의 93.2%로서 대부분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인 4,80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입금액을 벌고 있는 영세한 사업자들이다. 그리고 전문훈련직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는 훈련 또는 경력관리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수입이 발생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투입비용이 발생하고 수입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대응되는 비용이 거의 없고 가사 또는 생계관련 비용 등과 혼재되어 있어 세법상 용인되기 어려우며 조기은퇴 등의 이유로 수입이 발생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소득의 변동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으나 이것이 세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저소득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현안이 되어온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관련 세법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세법상 개념이 정규 법체계가 아닌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표의 경비율 적용 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실정이고 관련 세법 규정도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용역사업자의 특징이 세법에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며 체계성도 없다. 즉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는 세법에서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관련 연구도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세 과세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두 종류의 인적용역사업자의 특성을 반영하되 이를 종합적으로 접근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선행 연구를 발전시켰다.

먼저 의제 일용근로직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과세원칙을 원용하되 소득발생 형태가 일용근로자와는 달리 일당 형태의 소득이 아니므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기타소득 과세방법을 원용하여 정액이 아닌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과세표준에 대해 저율로 원천징수하고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이다. 또는 인적용역사업자의 번거로운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나 과세관청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1%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러한 대안은 의제 일용근로직 인적용역사업자의 근로소득자나 일용근로자와의 과세 형평성 및 영세한 사업자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업자들의 신규 시장 진입 즉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전문훈련직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문훈련직 인적용역사업자가 장래에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이러한 증빙을 미리 수집해 둔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총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일종의 창업비 상각액으로 간주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방법이다. 공제 비율은 직업군별로 차등 적용하되 소득발생시점부터 일정기간동안(예 : 5년) 적용한다. 그리고 일정비율은 소득금액 구간별로 차등을 두되 순차적으로 비율이 감소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둘째, 전문훈련직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가 가사 및 생계관련 비용과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총수입금액과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성격의 필요경비 이외에 일종의 생활비성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해주는 방안이다. 생활비성 필요경비는 직업군별로 차등 적용하되 소득금액의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인적공제 개산공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방법이다. 일정비율은 창업비 성격의 투입비용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득금액 구간별로 차등을 두되 순차적으로 비율이 감소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셋째, 전문훈련직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특정한 기간에 평생소득을 집중적으로 벌어들이는 특성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정도는 직업군별로 차별적이어야 할 것이다. 상대적인 저율과세 적용방법은 퇴직소득세 계산 시 적용하는 연분연승법을 원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직 선행연구가 미흡한 상태에서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진일보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과세방법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제시나 시뮬레이션 등은 후속된 연구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공병호, 2002, 『1인 기업가로 홀로서기』 21세기북스.
- 곽노현·김엘림, 2009, 『사회보장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김남중·정래용, 2014,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김유찬·이유향, 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편』, 한국조세연구원.
- 신현걸·정재연, 2014,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추계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와회계저널 제15권 제5호.
- 이정환, 2014, 『한국의 경제학자들』 생각정원.
- 장근호, 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 : 미국편(I)』, 한국조세연구원.
- 최진구, 2010.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과세방법 연구”, 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진구·한문성, 2012,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한 과세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상업교육연구(한국상업교육학회), 제26권 제3호.
- 최진구·홍정화, 2011,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과세방식의 문제점 분석 및 합리적 과세방안 연구” 세무학연구 제28권 제1호,
- 국세청, [http : //search.naver.com](http://search.naver.com)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 : //taxinfo.nts.go.kr](http://taxinfo.nts.go.kr)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http : //call.nts.go.kr](http://call.nts.go.kr)
- 법제처, [http : //www.moleg.go.kr](http://www.moleg.go.kr)

A Study on Improvement of Income Taxation on Labor Service Provider

Park, Jung Woo* · Jung, Rae Yong**

—〈Abstract〉—

It is not recent for non-regular workers or the independent businessmen with low income to be an issue our country has faced. Relevant tax law also has the same issue. Nevertheless, the reality is that taxation conception of income of labor service provider is defined not in regular law system but in the general provisions of expense rate application over simple expense rate and basic expense rate. Despite relevant tax law alienated from reality, there is rarely considered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service provider in tax law without method. In other words, it seems for labor service provider to be left out of the consideration of tax law. What's worse, there are few relevant studies.

Establishing the issues in income taxation on labor service provider, this study considers two types of labor service provider and the following is the suggestion of the improvement plans approaching the related issues comprehensively.

First of all, in case of fictitious daily worker as labor service provider, the taxation principle for daily worker is to be applied. However as its method of income generation is different from other types of daily worker whose income is on daily basis, this study insists that such difference be considered. Invoking the taxation on other incomes, it suggests that income tax is deducted as withholding tax at low rate not by flat rate but by the amount after deducting certain proportion as necessary expense and the case over the specific limit is imposed as total income tax. Or it deserves consideration to unify 1 % of withholding tax for labor service provider in order to be released from vexatious work of total income declaration or for taxation authorities to be out of heavy taxation task.

The next is three suggestions for professional labor service provider.

Firstly, since it is unrealistic for professional labor service provider to collect the evidential document for approval of expense in advance, this study suggests that certain proportion of total income is to be regarded as depreciation of initial expense, a sort of necessary expense. As for deduction rate, the differential tax rate is applied by occupational cluster for specific period from the point of income generation. It is reasonable to make this tax rate differential by each section of income and reduced gradually.

* Professor, Law School, Yonsei University, patrick@yonsei.ac.kr, First Author

**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Management, Hongik University, ryjung@hongik.ac.kr, Corresponding Author

Considering professional labor service provider has necessary expense undistinguishable from living cost, the second suggestion is to approve its living cost as well as the existing necessary expense directly related to total income as additional necessary expense. The necessary expense relevant to living cost is applied by occupational cluster, whose amount for deduction of estimated expenses is calculated by multiplying a certain rate of income. It is reasonable to make this tax rate differential by each section of income and reduce gradually as investing cost for starting business.

The third suggestion is to apply relatively low tax rate to professional labor service provider under the consideration the nature of intensive earning its lifetime income in specific period, the reduction ratio of which is to be differential by occupational cluster. The annual tax multiplied years method applicable to retirement income tax is available to relative low rate of taxation.

〈Key words〉 Labor service provider, the taxation on other incomes, investing cost for starting business, the necessary expense relevant to living cost, the annual tax multiplied years method